

## 「2023년도 안동시 중소기업 화재보험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

안동시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 기업의 피해를 줄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3년도 중소기업 화재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 8. 28.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이메일 접수  
(붙임파일)에서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 문의

- 사업 및 신청서 작성 문의:  
북부지소 ☎ 054-900-3800, 3838 (E-mail) khj5559@nate.com
- 본 공고와 관련하여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 및 진흥원 홈페이지 (고객의소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선정결과 통보

- 접수 홈페이지 공고(필요시 기업별 개별통보)

##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23년 안동시 중소기업 화재보험 지원 사업
○ 선정방법	: 서류심사(적격심사) 후 선착순으로 선정
○ 사업내용	: 공고문 내용 참조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23.12.까지
○ 대상자별지원금액	: 선정기업별 최대 50만원 한도
○ 신청방식	- 이메일 접수(khj5559@nate.com) - 직접 방문, 우편 접수(경북 안동시 북순환로 387)
○ 지원규모	: 80개사 정도
○ 신청서접수일시	: 2023.8.28.(월)
○ 신청서접수마감일시	: 예산소진시 까지

## 2. 추진절차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3. 사업목적

- 화재발생에 취약한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비책 마련
- 중소기업 재산권 및 생존권 보호로 기업경영 안정화 도모

## 4. 사업기간

- (사업기간) 선정일로부터 2023년 12월까지

\* 상기 사업기간은 추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5. 신청자격

---

- (해당지역) 안동
- (지원대상) 안동시에 사업장을 두고 아래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조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신청일 현재 가동 중인 기업
  - 화재보장(화재배상, 화재손해)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한 제조 중소기업

## 6. 참가기업 모집 및 선정

---

- 신청·접수
  - (접수기간) 2023. 8. 28.(월) ~ 예산소진시까지 제출분에 한하여 유효
  - (접수방법)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붙임파일)에서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 주 소: (36679) 경상북도 안동시 북순환로 387, 북부지소
    - 이메일: khj5559@nate.com
    - 전 화: 054-900-3800, 3838
-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통장사본 1부.
  - 공장등록증 사본 1부.
  - 보험가입증명서(보험증권) 1부.
  - 보험료납입내역 1부.
  -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1부.

## 7. 선정절차

---

- (선정방법) 서류심사(적격심사) 후 선착순으로 선정
  - 서류심사
    - 평가기준: 공장등록증, 보험증권 내용, 보험료납입내역 등 적격여부 심사
- (선정결과 안내)
  - 진흥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 8. 지원내용

---

- (지원내용) 보험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화재보장(화재배상, 화재손해) 포함 보험가입 시 연간보험료의 50% 지원(최대 50만원)
  - 재산종합보험 등 보험증권상에 따로 가입하는 경우도 내용 확인 후 지원
  - 보험가입일이 2023.1.1. 이후인 경우 소급 적용하여 지원
  - 보험 기간이 2023.1.1. 기준 12개월 이상인 보험 가입시 지원
- (지원한도) 선정기업별 최대 50만원 한도

## 9. 기타 유의사항

---

- 참여 기업은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신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 선정 공지 이후라도 자격조건 검증 과정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확인 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보험료 월납입의 경우 사업비 지원을 받은 다음달부터의 보험료 납입영수증 추가 징구 요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납입영수증 미제출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이익에 대하여는 의무적 환수와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을 부과 및 징수 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경상북도 경제진흥원 홈페이지([www.gepa.kr](http://www.gepa.kr))에 공고 예정